

포항공과대학교 학사운영 지침

(학사과정)

I. 등 록

1. 등록

- 학생은 매 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등록금의 금액과 납부기간은 등록기간 전에 공고한다.

가. 등록금 납부기준: 학기/납부금액

구 분	학 기	등록금 납부금액	비 고
전액등록학기	8학기 까지	전액 납부	장학금 지급 규정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은 학비감면분을 제외한 금액 납부
초과등록학기	9학기 이상	수강신청 학점에 따라 차등 납부 1~3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6 해당액 4~6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3 해당액 7~9학점: 당해학기 수업료의 1/2 해당액 10학점 이상: 당해학기 수업료 전액	

나. 분납 신청

- 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을 2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단, 추가 분할납부가 필요한 경우 지도교수의 결재를 받아 4회까지 분할납부 청원을 할 수 있다.
- ② 분납 신청 희망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분납 신청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 등록금의 반환

- ① 입학예정자 중 입학을 포기한 자와 입학 후 재학 중에 자퇴한 자가 등록금을 본 대학에 기 납부한 경우 적용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라. 항의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입학금 및 수업료를 반환한다.
 - 1) 법령에 의하여 입학 (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 의사를 표시한 경우
 - 4) 본인의 사망·질병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교에 입학할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라. 반환 기준

- ① 등록금 반환의 사유가 입학일 또는 학기 개시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수업료는 다음 기준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② 등록금 반환 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 2) 학기개시일 31일부터 60일까지: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 3) 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까지: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 4) 학기개시일 91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 ③ 재학 중 학칙에 의거 제적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자퇴하는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마. 학부 수업연한 초과자의 등록금 반환의 기준

- ① 등록금 납부 후 복학 시에는 납부한 등록금과 복학 시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등록금의 차액을 환불한다.
-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기에 따른 학부 수업연한 초과자의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 환불
 - 2)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 환불
 - 3) 수업일수 4분의 1이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 환불
 - 4)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 후 일반휴학자: 환불 불가
 - 5) 일반휴학 후 동일학기 내 군 입대 휴학자: 전액 환불
 - 6) 군입대휴학자: 전액 환불
- ③ 학기 중 자퇴자는 위의 '라'의 기준에 따라 환불

바. 이중학적 금지

우리대학 학생은 이중학적을 가질 수 없다. 단, 특별히 우리대학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II. 학 적

1. 휴학 및 복학

가. 휴학의 종류: 휴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일반휴학: 법인 설립으로 인한 창업, 질병, 가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하는 휴학
- 2) 군입대휴학: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하는 휴학

나. 휴학원 제출시기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일반휴학: 학기 도중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수업일수 4분의 3선 전 까지
- 2) 군입대휴학: 군입영일이 속한 학기에 입영통지서를 받는 즉시. 단, 입영일이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 이후일 때에는 수업종료일 이후에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휴학절차

- ① 일반휴학은 보증인 연서로 사유서를 첨부, 휴학원을 작성한 다음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②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휴학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법인등기부등본에 표기된 임원중 감사는 허가하지 않는다.
- ③ 군입대휴학은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일반휴학 또는 정학기간 중, 군에 입대할 경우에도 군입대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군입대휴학한 학생이 귀향조치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반휴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단, 수업일수 1/4 이내일 경우에는 귀향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도 가능하다.

라. 휴학기간

- ① 일반휴학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 ② 창업으로 인한 일반휴학은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최대 4개 학기까지 추가할 수 있다.

- ③ 군입대휴학은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기간으로 하며 휴학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질병, 천재지변, 또는 법적 조치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할 수 있다.

마. 휴학자의 성적처리

수업기간 중의 휴학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도 자동으로 삭제한다.

바. 복학

- ① 학칙 제 25조 참조.
- ② 창업휴학의 경우 창업휴학 사유가 소멸된 자는 당해 학기에 복학하여야 한다.
- ③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 제대 후 1년 이내에는 재학상태여야 함을 의미)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 복학시의 등록금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시기에 따른 복학 시 등록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학기개시일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 2) 수업일수 4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전액면제
- 3) 수업일수 4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2분의 1 이전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반액납부
- 4) 수업일수 2분의 1 경과한 날로부터 일반휴학자: 등록금의 전액납부
- 5) 일반휴학 후 동일 학기 내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 6) 군입대휴학자: 전액면제

2. 자퇴

가. 자퇴

- ① 학칙 제 26조 참조
- ② 시기: 재적 중 사유발생 시 가능하나, 해당 학기 자퇴는 수업종료일(기말고사 종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③ 성적처리: 해당 학기 중의 자퇴는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그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나. 자퇴자의 등록금 반환

- ① 학기개시일 30일까지: 수업료 6분의 5 해당액
- ② 학기개시일 31일부터 60일까지: 수업료 3분의 2 해당액
- ③ 학기개시일 61일부터 90일까지: 수업료 2분의 1 해당액
- ④ 학기개시일 91일 부터: 반환하지 않음

3. 졸업

가. 졸업요건

학칙 제 30조 및 34조의 졸업요건 참조.

나. 졸업시기

- ① 졸업은 1년에 2회 (전기: 2월 2번째 주 금요일, 후기: 8월 2번째 주 금요일) 실시한다.
- ② 후기에 졸업하는 학생은 별도의 학위수여식 행사를 하지 않고 전기와 함께 학위수여식을 한다.

다. 졸업 학점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학과별 졸업 기준학점을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학과	교양과목		기초 필수	전공과목			자유 선택	합계	실천 필수	실천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계				
수학	14	15	27	33	21	54	24	134	2	5
물리	14	15	27	39	21	60	15	131	2	5
화학	14	15	27	40	15	55	18	129	2	5
생명	14	15	27	43	12	55	21	132	2	5
신소재	14	15	27	47	21	68	10	134	2	5
기계	14	15	27	49	12	61	17	134	2	5
산경	14	15	27	37	18	55	23	134	2	5
전자	14	15	27	46	23	69	9	134	2	5
컴공	14	15	27	46	13	59	18	133	2	5
화공	14	15	27	34	21	55	22	133	2	5
창의IT	14	15	27	31	33	64	-	120	-	5

라. 수료

- ① 관련 근거: 학칙 제 34조 참조. 다음의 경우 수료를 인정할 수 있다.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 본 대학 학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였으나 TOEFL 550점 (CBT점수: 213점, iBT점수: 59점 Speaking 제외) 이상 취득하지 못한 경우.
- ② 신청절차: 수료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마감: 해당 학년도/학기 학위수여일)
- ③ 수료 후 학위취득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영어인증제 과목을 수강하여 1등급까지 이수하면 1등급을 이수하는 당해 학기말에 학위를 수여한다.
 -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TOEFL을 통과하면 통과하는 당해 학기말에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수료 후 1년이 경과함에도 TOEFL 550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TEPS 680점 또는 TOEIC 800점 이상 제출 시에도 학위 수여가 가능하다.

마. 영어인증제

영어교육 강화의 방안으로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영어인증제(졸업요건)를 시행하고 있다.

① 운영방안

배치고사 결과에 따라 5등급에서 1등급까지 배치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하여 통과할 경우 다음단계등급의 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거쳐 1등급까지 이수할 경우 영어 졸업 인증을 받게 된다.

② 운영사항

- 모든 영어 과목의 성적취득 구분은 S/U로 평가된다. 다만, 2007학년도 입학생까지는 영어I~IV 과목을 제외한 다른 영어 과목은 Grade로 평가된다. 또한, 영어I~IV 과목의 성적은 2005학년도 입학생부터 S/U로 평가되며,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영어인증제에서 이수한 과목들은 교양필수 외국어계열로 최대 4학점까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현 등급 과목에서 U 성적을 받을 경우 다음 단계등급 과목을 수강할 수 없다.
- 다만, 최초 배정된 등급의 과목을 이수한 후에 다음 단계 등급 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여 등급상향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인정: 단기유학, 어학연수, 카투사 군 복무 등 영어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어 프로그램 코디네이터와 협의 후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단계과목 수강을 허용)
- 배치고사 결과, 모든 등급 이수를 면제받은 학생은 영어인증과 동시에 졸업학점으로 4학점을 부여

한다.

③ 등급별 수강 과목

등급	수강과목	필수/선택
5등급	말하기+쓰기: 영어 I, II	필수 2 과목
4등급	말하기+쓰기: 영어 III, IV	필수 2 과목
3등급	말하기: 캠퍼스생활영어, 중급영어회화, 중급영어연설, 중급시청각영어	선택 2 과목
2등급	쓰 기: 중급영작문, 중급영어강독, 영문법 말하기: 고급영어회화, 고급영어연설, 고급시청각영어	· 쓰기 3과목 중 선택 1과목 · 말하기 3과목 중 선택 1과목
1등급	쓰 기: 고급영작문, 고급영어강독, 영어논문작성	선택 1 과목

④ 인증 증명: 영어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성적증명서와 학적부에 '영어졸업인증'을 표기한다.

바. STC 교과목 목록

학과	수학	과학	STC 이수요건	
			수학	과학
수학		-	과학 분야 최소 1과목 포함 택 5	
물리		- PHYS201 현대물리 - PHYS203 역학	물리과 과목 포함 택 5	
화학		- CHEM221 유기화학 I - CHEM243 화학분석	화학과 과목 포함 택 5	
생명		- LIFE319 생화학 I - LIFE321 분자생물학	생명과 과목 포함 택 5	
신소재	- MATH200 미분방정식	- AMSE201 신소재과학 - AMSE208 소재구조론	택 1	신소재 과목 포함 택 4
기계	- MATH210 응용복소함수론 - MATH230 확률 및 통계 (또는 MATH231 실험통계학/ IMEN272공학기초통계)	- MECH240 고체역학 I - MECH250 열역학	미분방정식(필수) 포함 택 2	기계과 과목 포함 택 3
산경		- IMEN261 최적화개론 - IMEN281 정보시스템기술	산경과 과목 포함 택5	
전자	- MATH261 이산수학 - MATH211 해석학 I	- EECE231 회로이론 - EECE233 신호 및 시스템 - EECE261 전자기학개론	확률및통계, 미분방정식	전자과 3과목
컴공		- CSED23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 CSED233 데이터구조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컴공과 과목 2과목
화공		- CHEB201 화공물리화학 I - CHEB208 화학생명공학	미분방정식 혹은 과학분야 과목 택 1	
창의IT			화공과 과목, 미분방정식포함 택 5	
			모든 STC과목 중 택 3	

사. 졸업논문심사 요건

① 학칙 제 46조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과	종별	세부사항	비고
수학	졸업논문심사 or 졸업종합시험	- 졸업논문 대상: 전공 성적이 우수한 학생 - 졸업종합시험: 기초필수 및 전공필수과목	-
물리	졸업논문심사		-
화학	졸업논문심사	CHEM499 학사논문연구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생명	졸업논문심사	LIFE402 학사논문연구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신소재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or	AMSE405소재공정디자인III(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졸업논문심사	AMSE406소재공정디자인Ⅳ(전공필수) or AMSE499 I 졸업논문 I (전공필수), AMSE499 II 졸업논문 II (전공필수)	
기계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MECH333 시스템설계 I (전공필수) MECH433 시스템설계 II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산경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IMEN230 제품생산공정설계 I (전공필수) IMEN330 제품생산공정설계 II (전공필수) IMEN430 제품생산공정설계Ⅲ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전자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EECE491 설계과제 I (전공필수) EECE492 설계과제 II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컴공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CSED491 I 과제연구 I (전공필수) CSED491 II 과제연구 II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화공	졸업논문심사	-	-
창의IT	실험실습보고(과제발표)	CITE201 창의IT설계 I (전공필수) CITE202 창의IT설계 II (전공필수) CITE301 창의IT설계Ⅲ(전공필수) CITE302 창의IT설계Ⅳ(전공필수)	교과목이수

4. 재입학

가. 대상 및 자격: 학칙 제 17조 참조

나. 허가 및 절차

재입학 지원자는 재입학원을 작성한 다음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적 전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고 보증인 연서로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학적

재입학자는 제적 이전의 학년, 학기, 학적변동이력, 상, 별(학사경고) 등의 학적사항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라. 학점 인정

재입학자의 기 이수한 학점은 재 사정 한다.

마. 등록

재입학 허가자는 소정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편입

가. 공통사항

- ① 재학연한: 학칙 제 6조에 의거 잔여기간의 1.5배를 적용한다.
- ② 전공학과변경: 편입학생의 전공학과 변경은 불가하다.
- ③ 졸업포상: 편입학생은 졸업포상에서 제외된다.
- ④ 일반휴학: 일반휴학횟수는 최대 2회로 신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총 휴학학기는 2학년 편입생의 경우 최대 3학기, 3학년 편입생의 경우 최대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 ⑤ 학사경고: 편입학생의 경우 학사경고 누적횟수가 통산 2회인 경우 제적한다.

나. 일반편입

- ① 학번 적용: 편입학년에 따라 당해 연도 2학년 또는 3학년이 되는 학번을 적용한다.

- ② 전적대학 학점인정 범위: 일반 편입학생의 경우 전적대학(교)에서 이수한 교과목 학점을 심사하여 본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인정받은 학점이 총 졸업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학점교류: 총 졸업 학점의 최대 1/6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단, 전적대학학점을 합산하여 총 졸업 학점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 ④ 졸업학점: 신 입학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실천필수는 면제한다.

다. 학사편입

- ① 학번 적용: 편입 당해 연도 3학년이 되는 학번을 적용한다.
- ② 학점교류: 총 졸업 학점의 최대 1/3까지 인정할 수 있다.
- ③ 학점이수요령
 - 1) 기초필수, 교양 및 실천교양 면제
 - 기초필수, 교양 및 실천교양은 전적 대학에서 모두 이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 만약, 학생이 교양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선택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할 수 있다.
 - 2) 전공 이수 방법
 - 학과별 이수교과목 및 전공학점 수는 전공학과에서 별도로 지정한다.
 - 필수 교과목을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경우, 학생의 요청에 따라 교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학점은 전공 선택 혹은 자유선택 교과목으로 대체 이수하여야 하며 상세사항은 학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필수 교과목을 면제 받을 경우 성적증명서에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6. 전공학과 변경

가. 정의

소속 대학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 소속 학과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나. 전과대상 및 시기

학칙 제 20조, 21조 참조

다. 절차

전공학과 변경신청 시 지도교수, 주임교수 및 변경희망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최종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소속변경 후의 이수과정

소속을 변경한 학생은 전입한 학과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7. 학적 기재사항 변경

- ① 학적부와 주민등록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여 정정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변경사유가 기재된 서류를 첨부하여 학적부 기재사항 정정원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요 변경사항: 성명(국문),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③ 첨부서류: 주민등록등·초본

III. 교과과정 및 수강신청

1. 교과과정 운영

교과목의 성격에 따라 이수구분을 다음과 같이 【1.교양필수, 2.교양선택, 3.기초필수, 4.전공필수, 5.전공선택, 6.자유선택, 7.부전공, 8.복수전공, 9.연구과목, 10.실천필수, 11.실천선택, 12.융합부전공】로 구분한다.

가. 교양필수 과목

모든 학생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양필수 과목으로서 글쓰기(2학점), 영어인증(4학점), 체육(2학점), 통합 HASS(6학점)을 포함하여 총 1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단, 체육 과목은 총 2학점 이수: 체력관리(1학점) 및 검도 외 13과목 중 1과목(1학점) 이수]

나. 교양선택 과목

위의 교양필수 과목 외에 [인문학·사회과학·예술]에서 총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 기초필수 과목

기초필수 과목은 전공과목을 이수하기 위한 기초과목으로서 모든 학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과목과 일부 학과에 적용되는 과목이 있다. 기초필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학과에 따라 총 27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모든 학과 공통적용 (27학점)

수학과 개설 [미적분학, 미적분학 연습, 응용선형대수], 물리과 개설 [일반물리 I·II 또는 일반물리개론 I·II 또는 일반물리(H) I·II, 일반물리실험 I·II], 화학과 개설 [일반화학(H), 일반화학실험], 생명과학과 개설 [일반생명과학 또는 일반생명과학(H)], 컴퓨터공학과 개설 [프로그래밍과 문제해결]

라. 전공필수 과목

전공필수 과목은 전공 이수를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이수학점은 학과에 따라 최소 31학점으로부터 49학점까지 다양하다. 학과에 따라서는 전공필수 과목을 전공 공통필수과목과 전공 선택필수과목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마. 전공선택 과목

전공과목 중 전공필수 과목이 아닌 모든 과목을 말하며 자기의 세부전공 분야에 맞는 과목을 선택, 이수하거나 대학원에서 전공하고자 하는 분야를 염두에 두고 관심 있는 과목을 전공선택 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전공선택 과목은 자기 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 외에도 '타 학과 교과목으로서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교과목'이 별도로 정해진 학과의 경우는 타 학과 개설교과목이라도 전공선택 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바. 자유선택 과목

자유선택 과목은 자기의 주 전공 외에 관심 있는 분야 교양 과목 및 타 학과 전공과목을 자유롭게 선택, 수강할 수 있는 과목이다. 학부생이 철강대학원(전문대학원) 교과목 수강 시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느 특정분야의 과목을 수강하다보면 그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토대로 부전공, 융합부전공 또는 복수전공을 이수할 수도 있다.

사. 실천필수 과목

실천필수 과목은 실천교양교육과정 이수를 위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으로서 이수 Unit은 대학 생활과 미래설계 2 Units이다.

아. 실천선택 과목

실천선택 과목은 실천교양과목 중 실천필수 과목이 아닌 모든 과목을 말한다. 최대 Unit의 제한은 없으며 최소 5 Units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자. 부전공, 융합부전공 과목: 부전공 및 융합부전공편 참조

차. 복수전공 과목: 복수전공편 참조

2. 강의시간표 편성

가. 강의시간표 편성기준

교시	1	2	3	4	5	6	7	8
75분	08:00	09:30	11:00	12:30	14:00	15:30	17:00	18:30
수업	- 09:15	-10:45	-12:15	-13:45	-15:10	-16:45	-18:15	-19:45

나. 학생 위주의 강의시간 편성

- ① 주중(월~금)이나 교시(시간대)별로 강의 및 실험실습 과목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② 2일 연속강의 (월+화, 화+수 등)와 하루에 연속 3시간 강의는 불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③ 저녁 7시 이후 강의는 지양한다.

다. 개설과목 변경

강의시간표 확정 후 『강좌 추가개설, 폐강, 강의시간 및 담당교수 변경 등』 사유 발생 시에는 '개설강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휴강 및 보강

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로 휴강을 하여 수업의 결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휴강 전후로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일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다만, 공휴일, 개교기념일로 인한 휴강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수강신청

가. 수강신청 시기 및 절차

① 수강신청기간

- 계절학기: 매 학기 개강 후 12주째
- 정규학기: 매 학기 개강 후 14주째

② 학생은 다음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완료한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수강신청 학점

- ① 직전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3.4 이상이며, 낙제과목(F)이 없는 학생은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수강신청 최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

구분	2000학번~2008학번	2009학번~2010학번	2011학번~
최대	18학점	20학점	22학점
기준	15학점	15학점	15학점
최소	10학점	10학점	10학점
최대 초과	학점 제한 없음(대상: 위 1항의 조건을 충족한 학생)		

- ② 직전학기 학사경고자는 15학점까지 수강신청함을 원칙으로 하여,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20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 교과목별 학수번호

- ① 학수번호는 네 자리의 문자와 세 자리의 숫자로 구성된다. 앞의 네 자리 문자는 교과목 개설학과를 나타내며(단, 인문사회학부의 경우 계열별로 구분) 뒤의 세 자리 숫자 중 첫 숫자는 과목의 대상학년 (난이도)을 나타내고 나머지 숫자는 임의의 고유번호를 나타낸다.
- ② 100단위는 1학년, 200단위는 2학년, 300단위는 3학년, 400단위는 4학년 수준을 표시한 것이며 500~800단위는 대학원 교과목임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과목의 수준이 반드시 수강대상을 제한하거나 구분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2학년이 300단위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4학년이 300단위 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500단위 이상의 과목을 수강할 수도 있다.

라. 선수과목

과목에 따라 선수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선수과목은 필수 선수과목과 추천 선수과목으로 구분된다. 필수 선수과목은 어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며, 추천 선수과목은 어느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 먼저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천하는 과목을 의미한다.

마.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 ① 수강신청 정정(과목 추가 및 삭제)은 개강 후 3일째에 실시되며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② 이미 수강신청한 내용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전산입력 후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수강신청확인 및 정정이 완료된 후 개강 3주째에 학생은 시스템에서 수강신청 및 정정 사항의 이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바. 수강과목 포기

- ① 수강 신청한 과목을 수강신청 정정 기간이 경과한 뒤에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과목 포기원'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한다.
- ② 개강 후 4주째부터 9주 이내에 수강과목을 포기하면 W(Withdrawal)로 부여한다. ('W'는 학점 및 평점 계산에서 제외)
- ③ 수강포기과목을 다시 수강 후 성적취득 시 이전 수강포기 과목은 삭제되며, 최근 과목의 이수구분 앞에 'RW'(Repeated after Withdrawal)로 표시된다. (단, 수강 포기과목을 다시 수강하지 않은 경우 W 표기 남김)

사. 재수강

- ① 기 이수한 성적에 제한 없이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할 수 있다. (F학점의 경우도 재수강 기준 적용)
- ② 재수강 후 취득하는 성적은 최대 B+까지만 인정한다.
- ③ 재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면 성적증명서에 원래의 성적은 삭제되고 재수강한 최근의 성적만 인정되며 이수구분 앞에 'R'(Repeated Course)로 표시된다.
- ④ 재수강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IV. 성적 및 학점취득

1. 시험·성적

가. 시험

- ① 중간 및 기말에 시행하는 정기시험과 Quiz, Report, 실험실습보고, 설계과제 등의 부정기 시험이 있으며 별도로 지정된 교과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학점취득 특별시험이 있다.
- ② 담당교수에 따라 시행시기, 횟수 및 성적반영 비율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중간시험은 개강 후 8주차에, 기말 시험은 16주차에 시행하고 있다.
- ③ 교양필수 및 기초필수 과목은 시험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외의 과목은 담당교수 재량으로 시간과 장소를 지정, 시행한다.

나. 성적평가

- ① 일반적으로 강의와 실험을 병행한 교과목의 성적은 Letter Grade로 평가하며 세미나, 논문연구, 과제물의 평가 등 정확한 등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의 교과목에 대하여는 그 성취도를 고려, S(합격)나 U(불합격)로 평가할 수도 있다.
- ② 시험 문제의 출제, 인쇄, 보관, 채점 및 감독은 교과목 담당교수 책임 하에 관리하며, 시험답안지, 출석부는 담당교수가 보관한다.

다. 성적제출 및 정정 기간

-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성적채점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성적제출기간 마감 후 성적을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성적정정원'을 성적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평점평균 산출방법

- ① 매 과목별 성적의 평점을 학점수로 곱한 수치를 과목별 평점이라 하며 전체 과목의 평점을 합하여 수강신청 총 학점수로 나누면 전체의 평점평균이 된다. 이를 공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frac{\text{과목별 평점 (과목별 성적의 평점} \times \text{과목별 학점수)의 합계}}{\text{수강신청 총 학점수}}$$

- ② 평점평균 산출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③ S(합격)는 취득학점으로 간주되지만 평점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 추가 시험

-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자는 시험개시 전에, '추가시험원'을 작성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추가시험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교과목은 추가시험에 의해 성적이 결정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I'(Incomplete)로 표기하되 추가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때에는 'F'로 처리한다.

바. 출석의무

- ① 학생은 각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여야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② 단, 천재지변, 질병, 대학이 인정하는 교외 행사 참석 등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 수업시간의 1/4 초과 결석 시, 대체 과제물 제출 등의 소정의 절차로 교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서 성적을 부여 받을 수 있다.

2. 학점교류

가. 국내대학 학점교류

- ① 지원 자격
 - 1) 정규학기: 2학기 이상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지원학기 기준). 단, 졸업학기에는 학점교류가 불가하다.
 - 2) 계절학기: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계절학기 수강 직후 정규학기 복학예정자 포함한다.
- ② 수강신청: 소속 학교의 수강신청기간 내에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고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속 학교는 수강신청결과를 수강학교로 통보한다.
- ③ 교과목이수: 기초필수 및 교양 필수과목은 본교에서 이수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수강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재수강은 원칙적으로 수강대학에서만 할 수 있다. 다만, 본교 대체인정과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④ 성적평가 및 인정
 - 수강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 평가는 수강대학 규정에 따르며 학점 및 성적은 그대로 인정, 표기하며, 평점계산에 포함한다. (적용시기: 2015년 여름학기부터)
 - 취득한 성적은 모두 표기하며, 수강포기(Withdrawal)로 처리할 수 없다.
 - 성적인정: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은 최초 인정 시, 모두 '자유선택'으로 표기한다.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성적을 전공 혹은 교양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교과목 교수,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 교양과목은 인문사회학부 교과과정위원 교수 확인
 - 이수구분 변경 기한: '국내대학 학점교류 이수구분 변경신청서'는 학점교류 완료 직후 학기(정규학기 기준) 수업일수 1/4선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수강료: 정규학기 등록금은 본교에 납부하고 계절학기 수강료는 수강학교의 징수기준에 의거 징수하여 수강학교로 납부한다.

나. 국외대학 학점교류 (해외 단기유학 프로그램)

- ① 지원 자격: 본교 지원서 제출 시점 기준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으로서 성적 평점평균 3.0이상이고, 정규 TOEFL 성적 88점(iBT)이상인 자 (졸업학기에는 단기유학 불가). 단, 비영어권 국가 대학 지원자는 ITP 토플 성적 570점 이상 또는 교내 영어인증제 2등급 이상으로 대체 가능하며, 파견대학 기준이 본교 기준과 다를 경우 파견대학 기준이 우선함.
- ② 파견기간: 1개 또는 2개 학기 (유학대학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③ 제출서류
 - 지원서(소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국문/영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TOEFL 성적표 1부 (해당연도 4월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의 성적)
- ④ 수강신청: 단기유학대학의 수강신청내역을 본교 수강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확인

을 받고 학과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최소학점은 8학점이상으로 한다. (Summer Session 경우 최소 3학점~6학점 이내)

- ⑤ 교과목이수: 전공과목 이수를 권장하며 교양과목 신청은 총 이수학점의 1/3범위 내에서 수강하여야 하고,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과내용이 동일한 교과목은 이수할 수 없다. (재수강 불인정) 교양필수 과목은 본교 과목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유학대학의 정규과목이 아닌 과목 (예: ESL 코스 과목 등)은 인정 불가함. 교양과목의 이수구분은 자유선택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Summer Session: 전공 무관)

⑥ 성적인정

- 성적표는 단기유학 대학에서 본교로 직접 발송한 공식적인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만 인정한다.
- 취득학점의 인정표기는 단기유학대학에서 취득한 교과목명과 성적을 성적증명서에 그대로 표기하며, 취득학점은 별도 승인 후 인정함. 인정한 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계산에는 제외한다.
- 취득한 성적은 Withdrawal 할 수 없다.
- 학생은 학점인정 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이수 과목 강의계획서 및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성적인정절차: 성적증명서 지참, 지도교수 상담(학생) → 각 과목 유사학과 혹은 담당교수 방문, 성적인정 요청(학생) → 지도교수, 주임교수 확인 → 학과사무실 제출(학생) → 학사관리팀으로 송부(학과) → 학점인정승인, 개인별 성적집계처리(학사관리팀) → 완료
 - * 교양과목은 인문사회학부 교과과정위원 교수 확인
- 학점 인정표는 해외 단기유학(혹은 Summer Session) 복귀 후 1개 학기 이내 제출되어야 함.

⑦ 학점취득기준에 대한 제재 조치

- 인정학점 5학점 미만 이수: 해외단기유학 교비장학금 50% 환수
- 인정학점 0학점, 학점인정표 기한 내 미제출자: 해외단기유학 교비장학금 100% 환수 (Summer Session 경우: 취득학점 0학점, 학점인정표 기한 내 미제출자는 유학지원 경비 100% 환수)

다. 대학인정 해외단기유학 프로그램

학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특별 해외단기유학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다. 국외대학 학점교류'를 준용하되, 지원 자격 및 교과목 이수에 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고 교육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3. 기타 학점취득

가. 학점취득 특별시험

- ① 학점취득 특별시험은 어떠한 교과목의 실력이 이미 일정수준에 도달하여 그 과목의 이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과목의 학점을 인정해 줌으로써 불필요한 학점취득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른 과목의 수강기회를 확대시켜 조기 졸업, 부전공, 융합부전공, 복수전공, 속진과정 등이 용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학점취득 특별시험의 학점 제한은 없으며, 합격자에 대하여 성적 (A+, A0, A-)을 부여하고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합격 인정된 학점 수는 학기당 최대 수강신청 학점 수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합격된 학점 수 만큼 다른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나. AP(Advanced Placement) 학점인정

- ① 본교와 협약이 체결된 영재학교 및 과학고등학교에서 취득한 선수과목의 학점 및 성적은 본교에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 ② 성적 인정 기준
 - 인정범위: 본교 및 공동AP지원센터에서 지정한 AP 인정 교과목

- 성적기준
 - i) 영재학교: 선 이수한 교과목 중 B0 이상
 - ii) 과학고: 학교별 공동 AP 학점 인정 기준 이상
- AP로 인정받은 성적은 평점평균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성적인정 절차
 - 신청방법: AP 인정 신청서 작성 후, 성적증명서 또는 학생생활기록부 원본을 첨부하여 학사관리팀으로 제출한다.
 - 신청기한: 입학 첫 학기 성적정정기간 이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 ④ 성적인정방법
 - 영재학교: 고등학교에서 받은 성적을 그대로 표기하거나 S로 표기한다(전체 인정과목에 일괄 적용).
 - 과학고: S로 표기한다.

다. MOOC 학점인정

- ① 학점인정기준
 - 1) 인정 학점
 - 과목 당 인정학점: 학습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강좌 당 1학점으로 인정한다.
 - 학기 당 인정학점: 학기 당 최대 1학점까지 인정한다.
 - 졸업학점: 최대 4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2) 이수 구분
 -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 전공필수, 교양필수, 교양선택으로 인정은 불가하다.
 - 이수구분은 소속 학과에서 수강승인 시에 결정한다.
 - 부/복수 전공선택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부/복수학과에서 이수 구분에 대한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취득 구분: S/U
 - 4) 유의 사항
 - 졸업학기에는 인정이 불가하다.
 - MOOC 교과목을 이용하여 대학에서 기 수강한 과목의 재수강은 불가하다.
 - 인정학점이 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성적증명서에만 기재하고 졸업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정규수업에 활용된 MOOC 교과목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 ② 교과목 이수 및 성적 인정 절차
 - MOOC 수강계획서 및 수업계획서를 지참하여 학과의 승인을 받은 후에 MOOC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 이수 완료 후, 학과의 승인을 받은 MOOC 수강계획서, 이수증 및 영수증, 이수보고서를 교육혁신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 교육혁신센터의 최종확인 후 학사관리팀에서 MOOC 학점 인정 처리를 한다.
- ③ 인정시기
 - 1학기(5월): 전년도 12월~당해 연도 5월 이수(1학기 복학자 가능)
 - 2학기(11월): 6월~11월 이수(2학기 복학자 가능)
 - * 인정 시기 별 지정된 기간 외에 소급 인정은 불가하다.

라. 인턴십 학점인정

- ① 학점인정 대상 프로그램: 하계인턴프로그램(SES) 및 대학 승인 학과 자체 국내·외 인턴십 프로그램
- ② 학점인정기준
 - 1) 인정 학점: 4주 기준 1학점으로 하며, 최대 4학점까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2) 이수 구분: 소속 학과에 따라 전공선택 혹은 자유선택으로 인정한다.

- 3) 취득 구분: S/U
- 4) 유의 사항: 인정 학점이 4학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2학점까지 성적증명서에 기재하고 초과하는 학점은 졸업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교과목이수 및 성적 인정 절차
 - 하계인턴프로그램: 하계인턴프로그램 자체 절차를 따른다.
 - 학과자체프로그램: 인턴십 참가확인서, 인턴십 평가서를 학과로 제출하여 학사관리팀의 승인을 얻어 성적을 인정한다.
- * 모든 인턴십 학점인정은 인턴십 종료 직후 학기 내에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야 한다.

V. 계절학기

1. 계절학기

가. 시기

계절 학기는 하기방학 또는 동기방학 기간 중에 개설한다.

나. 수강대상

- ① 계절 학기를 수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 1) 재학생
 - 2) 복학예정자 (계절학기 수강 직후 정규학기 복학예정자)
- ② 졸업예정자는 마지막 학기의 계절학기 수강학점은 당해 연도의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수강료 납부 및 반환

- ① 계절학기 수강료는 소정의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여야 한다.
- ② 기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 1) 과오납의 경우
 - 2) 계절학기 개강 전 수강 취소를 할 경우
 - 3) 기타 부득이한 경우(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 함)

라. 과목포기

- ① 수강 신청한 과목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교과목 담당교수 및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수강과목 포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성적처리

- ① 계절 학기에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 포함한다.
- ② 계절학기 성적은 학사처리(학기 우등생, 학사경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VI. 부/복수 전공

1. 부전공

가. 목적

학문의 이해를 넓히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주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과목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이수하는 제도이다.

나. 신청절차

- ① 부전공 신청학과의 전공과목 중 몇 과목을 한 학기 전에 미리 이수한다.
- ② 부전공 이수신청 시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부전공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이수학점

- ① 각 학과의 부전공 이수지침에 따라 21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학과에 따라 부전공 과목을 지정한 학과가 있으며 지정하지 않은 학과가 있는 경우에는 부전공학과 주임교수의 지도를 받아 체계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 ③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부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융합부전공

가. 목적

학칙 제 38조에 따라 융합부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

- ① 융합부전공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한 학기 전에 미리 이수한다.
- ② 융합부전공 이수신청 시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융합부전공 주관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이수학점

- ① 학과(전공)의 융합부전공 이수지침에 따라 21학점 이상의 지정된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융합부전공 학점으로 이중계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복수전공

가. 목적

학칙 제 39조에 따라 복수전공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신청절차

- ① 복수전공 신청학과의 전공과목 중 몇 과목을 한 학기 전에 미리 이수한다.
- ② 복수전공 이수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도교수, 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복수전공학과 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이수학점

- ① 각 학과의 복수전공 이수지침에 따라 3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복수전공 학과의 전공필수가 35학점 이상인 경우는 전공필수 모두 이수하면 되고, 35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전공필수를 이수하고 추가로 전공선택(타 학과 과목으로서 자과 전공선택으로 인정되는 과목 포함)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교과목의 학점을 전공학점과 복수전공학점으로 이중계산이 허용된다.

라. 학위취득

- ① 복수전공 학과의 학점을 이수하였더라도 주 전공 학과에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하면 복수전공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다.
- ② 복수전공의 학위는 주 전공 및 복수전공의 졸업요건을 동시에 충족되었을 경우에 가능하며 학위기는 주 전공 학위기와 같이 수여한다.

VII. 포상·징계

1. 포상

가. 포상

- ① 포상은 매 학기말에 실시하는 학기포상과 졸업 시에 실시하는 졸업포상으로 구분한다.
- ② 학기포상은 학적부에 기재하며, 졸업포상은 학적부와 졸업증서에 기재한다.

나. 포상 기준

- ① 학기포상: 학칙 제 47조 참조
- ② 졸업포상: 학칙 제 48조 참조

2. 징계

가. 학사경고: 학칙 제 49조 참조

VIII. 증명서발급

1. 증명서 발급

가. 발급 방법

학생이 교내 증명서 자동발급기 혹은 인터넷증명발급에서 발급 받거나 민원우편 또는 Fax로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나. 발급시간

증명서 자동발급기와 인터넷증명발급은 24시간 발급이 되며, 민원우편 또는 Fax 발급은 근무시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다. 증명서 종류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휴학, 정학자), 제적증명서, 졸업(학위)예정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 수료증명서, 성적증명서, 연구실적증명서(박사수료 후 연구생) (졸업(학위)예정증명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서 제출 후 학사관리팀에서 발급가능)

라. 발급 수수료

국·영문 증명서 종류에 상관없이 1매당 1,000원(인터넷증명발급은 대행업체 수수료 별도부가)